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5월 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5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5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영의)

□ 제안이유

- 2005. 2. 28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에 대한 정원을 승인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시범기관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며,
- 일반직 정원과 상계하여 배치된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여 버스정보시스템(BIS), 지능형교통체계 구축(ITS) 등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업무이관에 따른 일부부서의 정원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원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개별주택가격 평가 전담기구·인력 보강을 위하여 본청 세정과에 정원 1명과 함께 3개구청 세무부서에 과표평가팀 신설 및 이에 소요되는 정원 10명을 책정하고, 주민자치과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책정함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 총 정원 : 1,995명 ⇒ 2,008명(+13)
 - 집행기관 : 1,967→1,980명(+13) · 의 회 : 28명
- 정원조정 세부내역

구 분	계	집 행 기 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정 원	1,995	1,967	490	101	331	656	389	28
조 정	2,008	1,980	493	101	331	666	389	28
증·감	+13	+13	+3	·	·	+10	·	·

-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 3명을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고, 비상기획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시 별정직이 있는지? ○ 과거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별정직이 필요 없다하여 없었는데 다시 별정직을 만드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닙니까? ○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더불어 이런식으로 별정직을 만들다 보면 많은 수의 별정직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 현재 4명이 있습니다. ○ 공모를 하여 계약직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분야사업의 연계성과 전문성이 결여되므로 계약직을 별정직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별정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않으며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 계약직하고 별정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p> <p>○ 별정직이 되면 정규직화 되는 것인지?</p> <p>○ 업무추진상 계약직이 나은지 별정이 나은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p>	<p>○ 별정직으로 되면 계약직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p> <p>○ 정규직원으로 되는 것입니다.</p> <p>○ 별정직은 신분 보장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으나 계약직은 신분에 안정성이 떨어져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여 일의 능률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77호
의결 연월일	2005. 5. 19 (제119회)

제안년월일 : 2005년 5월 16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 3명을 별정직으로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질 뿐 아니라 기타 다른 계약직들도 일정기간이 도래하면 별정직으로 해주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전임계약직으로 두는 것으로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교통기획분야 전임계약직 3명을 별정직으로 직종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현행대로 전임계약직 3명을 두는 것으로 조정함.
(안 별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별지”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u>2,008</u>	<u>493</u>	28	101	331	<u>666</u>	389
정무직 계	1	1	-	-	-	-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u>1,629</u>	<u>394</u>	18	90	199	<u>543</u>	385
2급	1	1	-	-	-	-	-
3급	-	-	-	-	-	-	-
4급	13	5	1	3	1	3	-
5급	105	23	2	7	13	23	37
6급	<u>344</u>	<u>97</u>	5	18	50	<u>137</u>	37
7급	<u>537</u>	<u>159</u>	7	27	<u>83</u>	<u>149</u>	112
8급	<u>394</u>	<u>99</u>	3	31	<u>38</u>	<u>163</u>	60
9급	<u>235</u>	10	-	4	14	<u>68</u>	139
별정직 계	<u>4</u>	<u>3</u>	-	-	1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u>1</u>	<u>1</u>	-	-	-	-	-
7급상당	<u>3</u>	<u>2</u>	-	-	1	-	-
8급상당	-	-	-	-	-	-	-
연구직 계	2	-	-	-	2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2	-	-	-	2	-	-
지도직 계	8	-	-	-	8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8	-	-	-	8	-	-
기능직 계	364	95	10	11	121	123	4
기능6급	10	5	-	-	4	1	-
기능7급	33	13	-	-	11	8	1
기능8급	54	16	3	-	15	18	2
기능9급	117	28	6	4	46	32	1
기능10급	150	33	1	7	45	64	-

[수정안 포함]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1,995명”을 “2,008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967명”을 “1,980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관련)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청	동
총 계	<u>2,008</u>	<u>493</u>	28	101	331	<u>666</u>	389
정무직 계	1	1	-	-	-	-	-
시장	1	1	-	-	-	-	-
일반직 계	<u>1,629</u>	<u>394</u>	18	90	199	<u>543</u>	385
2급	1	1	-	-	-	-	-
3급	-	-	-	-	-	-	-
4급	13	5	1	3	1	3	-
5급	105	23	2	7	13	23	37
6급	<u>344</u>	<u>97</u>	5	18	50	<u>137</u>	37
7급	<u>537</u>	<u>159</u>	7	27	<u>83</u>	<u>149</u>	112
8급	<u>394</u>	<u>99</u>	3	31	<u>38</u>	<u>163</u>	60
9급	<u>235</u>	10	-	4	14	<u>68</u>	139
별정직 계	<u>4</u>	<u>3</u>	-	-	1	-	-
5급상당	-	-	-	-	-	-	-
6급상당	<u>1</u>	<u>1</u>	-	-	-	-	-
7급상당	<u>3</u>	<u>2</u>	-	-	1	-	-
8급상당	-	-	-	-	-	-	-
연구직 계	2	-	-	-	2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2	-	-	-	2	-	-
지도직 계	8	-	-	-	8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8	-	-	-	8	-	-
기능직 계	364	95	10	11	121	123	4
기능6급	10	5	-	-	4	1	-
기능7급	33	13	-	-	11	8	1
기능8급	54	16	3	-	15	18	2
기능9급	117	28	6	4	46	32	1
기능10급	150	33	1	7	45	64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 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1,995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967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 -----<u>2,008명</u>----- -----</p> <p>1. -----<u>1,980명</u></p> <p>2. (현행과 같음)</p>

기구 및 정원채정 따른 소요비용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내역

- 3개구청 세무부서에 과표평가팀 신설과 일제강제 동원 피해 진상조사

전담인력 정원채정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방공무원의 총정원 수를 증원함.

- 일반직

총증원수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13	-	-	3	5	4	1

- 기능직 : 해당없음

3. 비용소요 내역

- 직급별 증원 인력 및 연간 추계 소요 인건비

구 분	총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명)	13	-	3	5	4	1
소요액(백만원)	546	-	156	214	146	30